

대한상의 브리프

이재홍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제110호 2019년 11월 25일



편집자주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 회계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들이 꼭 유념해야 할 변화된 외부감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외부감사제도’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7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감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해 11월 시행되었다.

제정 수준의 개정이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회계제도 자체의 변화가 크며, **시행시기 또한 시행즉시(18년 11월)부터 2024년까지 폭넓게 적용되어 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 위주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외부감사 대상 확대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되는 기업이 늘어난다. 약 4,000개 기업이 추가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업형태와 규모 요건이 모두 확대되는 만

큼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기업들도 포함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추가

기업형태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똑같이 기업규모 요건을 적용하여 외감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적용 → 일정규모 이하만 제외

기업규모 측면에서도 현재까지는 자산, 부채, 종업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으나, **내년부터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변경된 외부감사 대상 기준]

기존 외감 대상

- 형태 : 주식회사
- 규모 :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1개 해당 시) 적용
- \$\$** 자 산 : 120억원 이상
- 📦** 부 채 : 70억원 이상
- 👥** 종업원 : 300인 이상

변경 외감 대상

- 형태 : 주식회사, 유한회사
- 규모 :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3개 이상 해당 시) 제외
- \$\$** 자 산 : 120억원 미만
- 📦** 부 채 : 70억원 미만
- 👥** 종업원 : 100인 미만
- 📄** 매출액 : 100억원 미만
- 👤** 사원수 : 50인 미만(유한회사 한정)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등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상장법인과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회사는 외부감사 제외요건에 관계없이 모두 외부감사 대상으로 적용받게 된다.

외부감사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항목도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과 사원 수(유한회사에 한정)가 추가되었다.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지금까지 정부는 감사인 미선임, 부채비율 과다 등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감사인을 지정해왔다. 新외감법에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자산규모 큰 220개사 우선 지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첫해 지정 대상회사가 쏠리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분산 지정할 방침이다.

2020년에는 자산규모가 큰 220사가 우선 선정되었으며, 10월(사전통보)과 11월(본통보)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통보받았다.

감사인 지정은 대상 기업(자산규모 기준)과 회계법인(감사인 지정 점수 기준)을 가~마군으로 분류한 뒤, 자산규모가 큰 대상 기업부터 회사 군과 동일 군 혹은 상위 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을 순차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 연기나 재지정 요청 가능

지정대상 기업인 경우라도 기존의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지정 감사가 연기된다. 또한 연결회사 간 주기적 지정대상 사업연도가 다를 경우에도 외부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정시기가 일치하도록 지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은 사전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본통지를 받은 후에도 1주 이내에는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거래에서부터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의 절차를 규정하고, 절차가 지켜졌는지 검증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내부회계 인증기준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지금까지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 의견만 제시해왔다. 이를 위해 회사의 내부통제 설계가 적절한지 담당자 인터뷰와 문서 검증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했다.

하지만 인증기준이 ‘감사’로 상향되면 강화된 검증 절차를 거쳐 ‘감사’ 의견을 받아야한다. 중요한 통제 활동 재수행, 현장관찰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외부감사인이 직접 검증하게 된다.

연결회사까지 회계관리 운영 확대

또한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의무가 기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까지 확대된다. 당해 회사뿐 아니라 종속기업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는 2019년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으로의 운영의무 확대는 2022년 사업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 강화규정 시행시기]

자산규모	내부회계관리 감사의무화	연결회사 운영의무 확대
2조원 이상	2019 사업연도	2022 사업연도
5천억원~2조원	2020 사업연도	2023 사업연도
1천억원~5천억원	2022 사업연도	2024 사업연도
1천억원 미만	2023 사업연도	

[4] 외부감사 과징금 제도 신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외감법상에 도입되었다. 이전까지는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 이내, 상한 2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新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이내(절대금액 상한 없음)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외부감사 과징금 부과 기준]

회사	임직원 및 감사	외부감사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이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 이내	감사보수의 5배 이내

기업대응에 따라 과징금 경감 또는 가중

과징금은 위반정도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감리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된다.

반면, 투자자 피해 배상 등 위반상태의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노력, 위반자의 객관적 부담 능력,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준수 또는 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예방 노력,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에 주는 시사점

지난해 新외감법이 첫 시행된 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기업이 증가한 바 있다.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변경된 제도를 잘 숙지해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외부감사인이 교체됨에 따라 기업과 당기감사인, 전기감사인 간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당업종과 회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 감사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대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기준 강화로 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미국에서도 2004년 최초 도입 시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이 15.9%에 달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초기 비용 증대와 전담인력 소요를 예상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에 대비해 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정비를 해야 하며, 임직원 교육 등 철저한 운영준비가 필요하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19년 11월 25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7	2018 ^(E)	IMF		OECD	
			2019 ^(P)	2020 ^(P)	2019 ^(P)	2020 ^(P)
한국	3.1	2.7	2.0	2.2	2.0	2.3
세계	3.7	3.6	2.0	3.4	2.9	2.9
미국	2.2	2.9	2.4	2.1	2.3	2.0
중국	6.8	6.6	6.1	5.8	6.2	5.7
일본	1.9	0.8	0.9	0.5	1.0	0.6
EU	2.5	1.8	1.2	1.4	1.2	1.0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2018	'19.6월	7월	8월	9월	10월
원/달러	1,161	1,131	1,100	1,176	1,175	1,209	1,198	1,184
원/엔(100엔)	1,068	1,009	996	1,088	1,086	1,137	1,116	1,094
원/위안	174.4	167.5	166.4	170.0	170.9	171.0	168.2	166.9
원/유로	1,283	1,276	1,299	1,327	1,319	1,346	1,319	1,309
유가(Dubai)	53.8	53.2	69.7	61.8	63.3	59.1	61.1	59.4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	'19.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3.0	2.5	1.4	-0.8	0.5	0.2	0.5	-
소매판매	3.9	1.9	4.3	1.2	-0.3	4.1	3.3	-
설비투자	-1.3	14.1	-3.8	-9.0	-4.7	-2.7	-1.6	-
수출	-5.9	15.8	5.4	-13.8	-11.1	-13.9	-11.7	-14.7
수입	-6.9	17.8	11.9	-10.9	-2.6	-4.3	-5.6	-14.6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